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4. 3.

마장중학교

[학생안전자치부]

2024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학생안전자치부

1 목표

- 가.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한다.
- 나. 서로 협력하는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삶의 보람을 체득하도록 한다.
- 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정신을 기른다.

2 방향

- 가. 학생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시간 수 확보보다 실질적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의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 나. 학교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배정하여 체험학습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 학교의 봉사활동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
- 라. 봉사활동은 교사, 학부모, 봉사활동 관련 단체 지도자와 학생이 동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한다.
- 마. 학생 봉사활동의 대상이나 영역은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을 권장한다.
- 바.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사후 반성과 평가를 하도록 한다.
- 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운영 방침

가. 교내봉사활동 시간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년도별 10시간 이내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활성화 위원회) 구성과 운영

1)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봉사활동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 계획위원은 학년별 단계에 알맞게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실행위원은 영역별, 학년별 봉사활동 실행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계획 수립, 평가방법, 결과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2)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운영

-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관련기관, 학부모 봉사단, 봉사활동 지도자,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학년별로 봉사활동 영역과 시간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한다.
- 봉사활동 관련 단체와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한다.
-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봉사활동 계획수립, 학생봉사활동 지원방법, 봉사활동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며,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하여 교외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학급 담임교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장소,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입력하고 학년말에 봉사활동 누가기록물을 출력한다. (내신 성적 만점 15시간으로 변경)

4 세부 추진 계획

가. 대상 및 기간

- 1) 대상: 본교 1~3학년
- 2) 기간: 2024.3.4. ~ 2025.1.8.

나.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6시간 (1학기: 3시간, 2학기: 3시간)

영역 (우천시)	대상	시기	시간	세부 활동 내용 (우천시)	담당	비고
환경보호활동	전학년	3월 20일 6교시	1	실내외 환경정화 활동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학년	4월 3일 6교시	1	플로깅 (지구사랑 캠페인)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2학년	4월 17일 6교시	1	플로깅 (지구사랑 캠페인)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1학년	5월 8일 6교시	1	플로깅 (지구사랑 캠페인)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전학년	7월 19일 2교시	1	실내외 환경정화 활동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전학년	8월 14일 1교시	1	실내외 환경정화 활동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학년	9월 25일 6교시	1	플로깅 (지구사랑 캠페인)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전학년	10월 11일 1교시	1	실내외 환경정화 활동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2학년	10월 16일 6교시	1	플로깅 (지구사랑 캠페인)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1학년	11월 6일 6교시	1	플로깅 (지구사랑 캠페인)	학생안전자 치부	2015교육과정적용

다. 봉사활동 연간 계획표

월	세부 추진 계획	담당부서
3	▷ 전교생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실내외 환경 정화 활동(3월 20일)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4	▷ 3학년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플로깅(지구사랑 캠페인)(4월 3일) ▷ 활동 장소 : 학교 인근 및 마장면 일대, 사전 안전교육 실시 ▷ 2학년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플로깅(지구사랑 캠페인)(4월 17일) ▷ 활동 장소 : 학교 인근 및 마장면 일대,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5	▷ 1학년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플로깅(지구사랑 캠페인)(5월 8일) ▷ 활동 장소 : 학교 인근 및 마장면 일대,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7	▷ 전교생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 실내외 환경 정화 활동(7월 19일) ▷ 하계 방학 중 봉사활동 안내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8	▷ 전교생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실내외 환경 정화 활동(8월 14일)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9	▷ 3학년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플로깅(지구사랑 캠페인)(9월 25일) ▷ 활동 장소 : 학교 인근 및 마장면 일대,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10	▷ 전교생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실내외 환경 정화 활동(10월 11일) ▷ 2학년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플로깅(지구사랑 캠페인) (10월 16일) ▷ 활동 장소 : 학교 인근 및 마장면 일대,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11	▷ 1학년 교내 봉사활동 실시 (1시간): 플로깅(지구사랑 캠페인) (11월 6일) ▷ 활동 장소 : 학교 인근 및 마장면 일대,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12	▷ 학생별 봉사활동 총 이수 시간 안내 ▷ 등계 방학 중 봉사활동 안내	학생안전자치부 담임교사

라.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원으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영역(학년)	활동명	세부 활동 내용	참가학생(명)	시기	시간	담당부서
이웃돕기활동 (전학년)	정보화기기 관리 도우미	학급 정보화 기기 사용 및 관리	14명	학기별	5시간 이내	정보과학부
환경보호활동 (전학년)	사랑의 환경 봉사단	학급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담당	28명	학기별	5시간 이내	학생안전 자치부
이웃돕기활동 (전학년)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	학급 전등 및 냉난방기 조절과 문단속	27명	학기별	5시간 이내	학생안전 자치부
이웃돕기활동 (전학년)	학교행사 도우미반	학교행사 지원 및 행사 시 학생 질서 유지	16명	연중	10시간 이내	학생안전 자치부
환경보호활동 (전학년)	학교 환경 도우미반	학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담당	6명	연중	10시간 이내	학생안전 자치부

이웃돕기활동 (전학년)	방송반	학교 각종 행사 방송 및 점심시간 음악방송	12명	연중	10시간 이내	정보과학부
이웃돕기활동 (전학년)	도서관 지원단	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업무 지원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희망학생	연중	10시간 이내	교육연구부
이웃돕기활동 (전학년)	또래도우미	장애학생의 특별실 이동 및 수업 준비물 챙기기 도움	통합학급 당 1명	학기별	5시간 이내	교무기획부 통합교육실

5 학생 봉사 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1)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4)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반드시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1)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2)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현월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3)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6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

    graph LR
      A["[학생]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B["[학생]  
봉사활동  
실행"]
      B --> C["[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C --> D["[학교]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D --> E["[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 실적 연계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 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소양교육,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등을 활용)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처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생이 학년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을 증빙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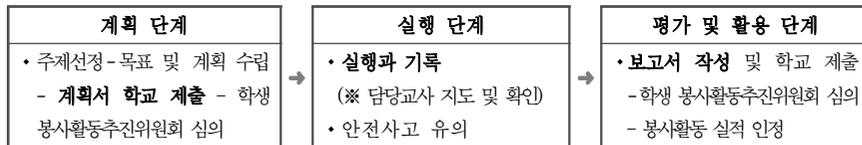
    graph LR
      A["[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B["[학교]  
봉사활동  
계획 승인"]
      B --> C["[학생]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C --> D["[학교]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D --> E["[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현월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7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듬형** :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 기간은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기관 및 장소** :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동일기관·연계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 학생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 **평가**: 학년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 **기타사항**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추진 시 인정 기준, 가능 기관, 절차 등 모든 사항은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는 <참고자료 4> 에서 서식 참고**

8 기대 효과

- 가. 교내봉사활동을 일상화하며 이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해 나간다.
- 나. 교내봉사활동을 통하여 학교 공동체 의식과 사회 공익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 다. 개인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부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참고사항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1365.go.kr	http://www.vms.or.kr	http://dovol.youth.go.kr
경기도 내 센터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 센터 없음)
봉사활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 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확인서에 표현된 봉사주관기관명	봉사실적등록기관	관리센터[수요처]	현재는 없음. 수정 요청 중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는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흡수
 → 'e-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DOVOL' 과 연계됨
 (e-청소년: 전국 2,300여개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 봉사활동 실적의 나이스 연계 시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연계하면 주관기관명은 모두 '~센터'로 입력됨
- 개인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면 기관장명으로 출력되고(예: ~협회장), 봉사기관이나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출력해 주면 기관명으로 출력됨(예: ~협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는 봉사활동에 대해 인증만 할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 기관으로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별도의 봉사기관이 있다면 봉사활동 주관기관명에 '○○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아니라 해당 봉사기관명이 입력되어야 함

-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기관 교육 시 봉사활동 내용 및 기관명 입력에 대한 정확한 전달 필요

※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침에 따라 입력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입력
- '활동 내용'란에 객관적 활동 내용 및 봉사활동 제목에 한하여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관명, 대학명, 상호명, 강사명은 제외하여 입력
- '활동 내용'란에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 입력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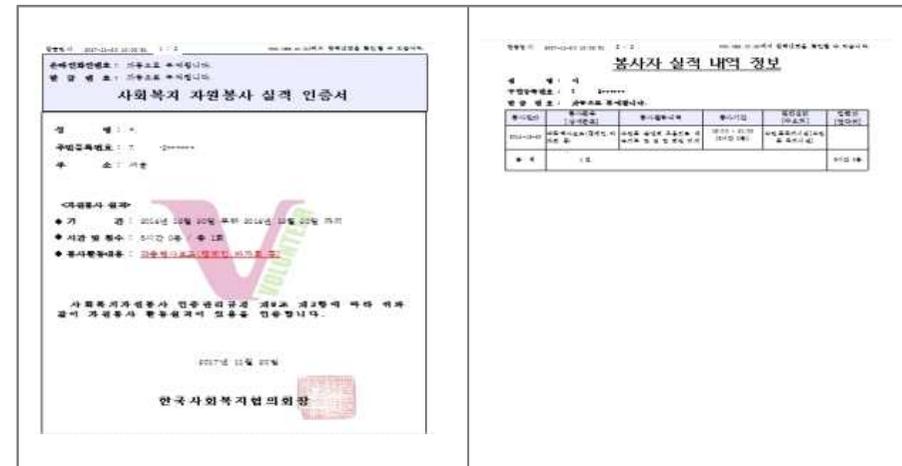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DOVOL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주관기관 표시 없고 센터로 발급됨)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봉사실적등록기관'란에 표기되어 있음)

- 붙임 1. 2015 개정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1부.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1부.
3.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1부.
4.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1부.
5. 봉사활동 각종 서식 1부.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관리센터[수요처]'란의 [수요처]에 표기되어 있음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영역별 지침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③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④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중·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임(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7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2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1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계획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리더십 배양과정의 교육과정상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리더십 배양과정 참가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4.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현웃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 없음)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 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1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철사하여 입력함. 다만,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4.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5.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6.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자),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7. 번역

- **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활동 내용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활동 내용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의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8. 선물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9. 학생이 실무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20.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이 「사건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21.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당해 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붙임 3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구 분	쪽수	주요 내용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5	<p>○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종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table border="1"> <tr> <td>공공부문</td> <td>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td> </tr> <tr> <td rowspan="2">민간부문</td> <td>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td> </tr> <tr> <td>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16	<p>○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4 11	<p>○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확인 필요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14	<p>○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 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예시)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14	<p>○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 필수 조건 아님) (예시)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붙임 4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종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 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 에게는 안내 가능)
 - 중학생의 경우 학생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안내 바랍니다.**
- ※ 가정통신문 발송과 함께 학교홈페이지 탑재 요망
 ※ 온라인 교육자료 또는 콘텐츠 활용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시 안내

붙임 5

2024학년도 봉사활동 각종 서식

[서식 1]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결재	담임	부장
인적 사항	마장중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주관 기관				
활동 장소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p>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생 성명 : (서명)</p> <p>마장중학교장 귀하</p>				

[서식 2]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인적사항	마장중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기관 연락처	
봉사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p>20 년 월 일</p> <p>확 인 자 : 직위 성명 (인)</p> <p>확인기관명 : 마 장 중 학 교 장 (직인)</p>										

[서식3]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결재	담임	부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마장중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주관 기관					
봉사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 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마장중학교장 귀하					

[서식3-1]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재	담임	부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마장중학교장 귀하						

※ 모듬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고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하세요.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서식 3-2]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운영 보고서			
프로젝트명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총 ()시간	
	○ 20 년 월 일 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내용 - - 	
	○ 20 년 월 일 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내용 - - 	
	○ 20 년 월 일 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내용 - - 	
	활동 사진	활동 사진	활동 사진
	[오른쪽 마우스-선택두리/변경-각셀마다 적용-배경-그림 클리-폴더에서 사진 선택-설정]		
	사진 내용 설명		
실천 결과 및 느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결과 작성> - - ○ 실천 후 느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낀점 작성> - - 		

[서식 4]

헌혈 학부모동의서·사후 확인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사항	마장중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전혈) () / 헌혈(성분헌혈) ()					
<p>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부모 성명 : (인)</p> <p>마장중학교장 귀하</p>						

[서식 5]

□ 20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

마장중학교

회의일시		회의 참석자	위원장 : 교감 ○○○
회의장소			부위원장 : ○○○
회의안건			위원 : 000, 000, 000, 000, 000, 000
			기록 : ○○○
회의 내용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내용			